

수원지방법원 2021. 10. 15 선고 2020나9229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9. 10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5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가소27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7,216,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누나인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덤프트럭을 이용한 운송업체를 운영하다가, 2019. 1.경 원고 명의로 등록된 피고 소유의 (차량번호 1 생략) 덤프트럭(이하 ‘이 사건 덤프트럭’이라 한다)을 D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.

나.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6,856,290원을 부과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부가가치세’라고 한다), 원고는 2020. 11. 11. 위 부가가치세에 가산금 925,560원을 더한 7,781,850원을 납부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7,781,850원을 납부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7,781,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고,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,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3. 판단

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을 제7호증, 을 제8, 9호증의 각 1, 2의 각 기재,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피고가 원고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, 2018년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,977,980원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6,856,290원이 각 부과된 사실, ② 이 사건 덤프트럭이 지입된 지입회사의 운영자인 E는 피고에게 전화하여, 이 사건 덤프트럭이 D 명의로 이전되면서 종전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원고 명의로 이전할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는데 그 환급금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인지 물었고,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니 그 환급금에서 2018년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해주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한 사실, ③ E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이

사실인지 원고에게 확인하고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2018년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,977,98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준현, 판사 김정운, 판사 김재학